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비상설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03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비상설 전환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비상설화

가. 개정안 요지

- 현재 상설 운영 중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소속으로 <u>등록취소심의위원회</u> 를 둔다. <u><신설></u>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은 제9조의3제2항----- ----- ----- ----- <u>필요한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u>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등록취소심의위원회</u> 를 해산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허위·부정 등록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스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지 명령,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이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²⁾.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취소 심판 청구(법 제9조의3제2항)는 사업자의 추상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등록취소(법 제9조의3제5항)는 사업자의 무능력, 불성실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 위법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등록취소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그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경우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요]

구 분	내 용
구 성	구성인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위원: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위촉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 위촉위원의 임기: 3년
기 능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 처분 심의
현 황	2024년 12월 임기 만료 후 2025년 1월 현재까지 미구성

○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문체부는 현재 상설 운영 중인 등록취소심의위원회³⁾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문체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뉴스통신사 수(38개사)를 고려할 때 향후 동 위원회가 빈번히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문체부는 비상설 운영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사전에 언론 관련 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사안 발생 시 위원장(문

3) 참고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문체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됨.(「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체부차관, 당연직) 중심으로 위원을 신속히 구성·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⁴⁾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⁵⁾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뉴스통신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 위원회 중 문체부 소관 위원회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위원회가 선정되었고, 이 중 기정비된 2개 위원회(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4)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제22대 국회 문체부 소관 위원회 정비 정부입법 현황]

연번	위원회명	소속	위원장 (임기)	위원수 (공무원 제외)	정비방안
1	국가도서관위원회	대통령	윤희윤 (‘24.4~’26.4)	15명	소속 변경 (대통령→부처)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대통령	미구성	-	소속변경 (대통령→총리)
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부처	문체부장관	14명	정부협의체 전환
4	(뉴스통신)등록취소심의위원회	부처	문체부1차관	7명	비상설화
5	공공디자인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6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7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8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9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10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1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도록 한 바, 개정안은 현재 등록 취소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현행법은 사업정지 명령, 등록 취소 등의 처분 시 의무적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데에 비해 개정안은 동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재량절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 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재량에 따라 거치게 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 사업정지 명령, 등록취소 처분 등은 사업 수행 자체를 불허하는 처분으로 뉴스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바,

현행법은 동 처분에 대한 판단 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각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7일에 동시 제출되었으나, 다른 3개 위원회가 종합계획 수립, 정책자문,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에 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뉴스통신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관해 심의하고 있어, 기능적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되, 사업정지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 처분 시 의무적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80